

[서식 예] 사실조회신청서 (구청)

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서

사 건

원 고 ㅇㅇㅇ

피 고 ㅇㅇ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조회기관

명칭:○○면사무소

주소: (우편번호: 00000)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123

전화: 000-000-0000

2. 사실조회의 취지

201X. 0. .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○○○의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 표시정정절차를 밟기 위하여 위함입니다.

3. 송부할 문서 : 별지

201X. 0. .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(공익법무관) O O O

○○ 지방법원 귀중



별지

사실 조회 사항

위 피고 OOO(주민등록번호:)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, <u>각 상속인</u>들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망인의 상속인 사망시에는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)등을 각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.



제출법원	수소법원	관련조문	민사소송법 제294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의 의	법원은 공공기관·학교, 그 밖의 단체·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·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.		
기 타	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지식,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,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,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함(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2270 판결). ・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(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21022 판결). 		